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 및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
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정원 : 현안사업추진과장(5급), 보상팀장(6급)

1) 존속기한 : 2024. 1. 1. ~ 2026. 6. 30.(2년 6개월)

나. 기준인력 반영 : 13명

1) 통합돌봄 : 9명(읍면별 1명, 보건의료원 1명)

2) 재난안전상황실 : 3명(안전교통과)

3) 자살예방 : 1명(보건의료원)

다. 평창군 정원관리기관·직급별 정원(안 별표3)

1)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

구분	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현행	776	396	18	191	21	150
개정	776	387	18	192	21	158
증감	-	△9	-	+1	-	+8

2) 직급별 정원조정

구분	계	특수경력직		경력직									
		정무직	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지도관	연구사	지도사
현행	776	1	775	1	4	36	184	214	196	110	2	4	24
개정	776	1	775	1	4	35	183	213	201	109	2	4	23
증감	-	-	-	-	-	△1	△1	△1	+5	△1	-	-	△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8조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224(2026. 1. 16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224(2026. 1. 16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558(2026. 1. 16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004(2026. 1. 29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568(2026. 2. 9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776	776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746	746				
3급	1	1				
4급	4	3		1		
4~5급						
5급	35	18	2	6	1	8
6급 이하	706	706				
전문경력관 소계						
연구직 계	4	4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4	4				
지도직 계	25	25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23	23				
별정직 계	0	0				
6급상당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	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회사무과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읍·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776</td> <td colspan="5">776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5">1</td> </tr> <tr> <td>군 수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745</td> <td colspan="5">745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~5급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36</td> <td>19</td> <td>2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704</td> <td colspan="5">704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4</td> <td colspan="5">4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4</td> <td colspan="5">4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26</td> <td colspan="5">26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사</td> <td>24</td> <td colspan="5">24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0</td> <td colspan="5">0</td> </tr> <tr> <td>6급상당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	총 계	776	776					정무직 계	1	1					군 수	1	1					일반직 계	745	745					3급	1	1					4급	4	3		1			4~5급							5급	36	19	2	6	1	8	6급 이하	704	704					전문경력관 소계							연구직 계	4	4					연구관							연구사	4	4					지도직 계	26	26					지도관	2		2				지도사	24	24					별정직 계	0	0					6급상당							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회사무과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읍·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776</td> <td colspan="5">776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5">1</td> </tr> <tr> <td>군 수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746</td> <td colspan="5">746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~5급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35</td> <td>18</td> <td>2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706</td> <td colspan="5">706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4</td> <td colspan="5">4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4</td> <td colspan="5">4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25</td> <td colspan="5">25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사</td> <td>23</td> <td colspan="5">23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0</td> <td colspan="5">0</td> </tr> <tr> <td>6급상당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	총 계	776	776					정무직 계	1	1					군 수	1	1					일반직 계	746	746					3급	1	1					4급	4	3		1			4~5급							5급	35	18	2	6	1	8	6급 이하	706	706					전문경력관 소계							연구직 계	4	4					연구관							연구사	4	4					지도직 계	25	25					지도관	2		2				지도사	23	23					별정직 계	0	0					6급상당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776	77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 수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745	7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4	3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~5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36	19	2	6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704	70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6	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2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24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0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776	77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 수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746	74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4	3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~5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35	18	2	6	1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706	70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5	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2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23	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0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(생략)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 5. (생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 - 2210